

<붙임 8>

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

※ 법 제418조제11호에 따른 본점의 위치 변경시 작성한다.

1. 본점의 위치 변경 보고내용

구 분	현 재	이전 후
위 치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, 708호,709호(여의도동, 미원빌딩)	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70, 708호(여의도동, 미원빌딩)
이전일자 및 그 사유	이전일자: 2026.09.22 사유: 709호 임대차계약 종료에 따른 본점 소재지 변경	

2. 금융거래자에 대한 조치

■ 첨부서류

등기부등본 등 위치 변경예정지의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